

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제3515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4. 10. 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고금리·고물가에 따른 지속적인 경기침체,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‘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료 지원사업’ 출연금 예산 편성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기관 : 경기신용보증재단

나. 출연의 필요성

- 시에서 출연한 재원의 최대 10배 범위 내에서 관내 소상공인에게 심사 기준 완화 등 우대기준을 적용한 보증지원으로 경영애로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

다. 주요 사업내용

- (소상공인 특례보증) 관내 3개월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보증
- (소상공인 특례보증료 지원) 특례보증 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수수료 지원

※ 대출금액의 1%, 업체당 1회 한해 지원

3. 관계법령

가.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(기본재산)

나.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(특례보증)

4. 예산수반사항

가. 출연 예정금액 : 1,700,000천원(시비 100%)

나.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

(단위:천원)

2025년도 시 출연금	2024년도 시 출연금	전년대비 증감액
1,700,000	1,500,000	(증)200,000

5. 그 밖의 참고사항

가. 최근 3년간 출연금 및 특례보증 실적

(단위:천원)

연도별	출연액	업체수	추천금액	비고
2024년	1,500,000	550	1,500,000	※ 9.30일 기준
2023년	1,000,000	398	1,000,000	
2022년	1,500,000	596	1,500,000	
계	4,000,000	1,544	4,000,000	

나. 최근 3년간 특례보증료 지원 실적

(단위:천원)

연도별	집행액	업체수	비고
2024년	48,880	170	※ 9.30일 기준
2023년	49,950	187	
2022년	29,880	127	
계	128,710	484	

소관 실·과·소		일자리경제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명	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
	팀장 직위·성명	소상공인지원팀장 송지연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서기보 공성민(☎5265)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(특례보증)

나.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'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료 지원사업' 추진

- 출연대상 : 경기신용보증재단
- 지원한도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

2. 비용추계

가. 비용추계의 전제

-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활용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출연금 확보
-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 및 자금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용자 수요 증가

나. 비용추계결과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계
총 소요액	1,700,000	1,800,000	1,900,000	2,000,000	2,100,000	9,500,000
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	1,700,000	1,800,000	1,900,000	2,000,000	2,100,000	9,500,000

※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

다. 재원조달방안 : 2025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

- 예산과 협의필

3.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

- 해당없음

4. 작성자 :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과장 이회숙 팀장 송지연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: 천원)

구 분	1차연도	2차연도	3차연도	4차연도	5차연도	계
세 입	1,700,000	1,800,000	1,900,000	2,000,000	2,100,000	9,500,000
지방세수입	1,700,000	1,800,000	1,900,000	2,000,000	2,100,000	9,500,000
세 출	1,700,000	1,800,000	1,900,000	2,000,000	2,100,000	9,500,000
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	1,700,000	1,800,000	1,900,000	2,000,000	2,100,000	9,500,000
재원 조달	1,700,000	1,800,000	1,900,000	2,000,000	2,100,000	9,500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1,700,000	1,800,000	1,900,000	2,000,000	2,100,000
	지방세수입	1,700,000	1,800,000	1,900,000	2,000,000	2,100,00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
그 밖의 사항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

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

제7조(기본재산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조성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2. 금융회사등의 출연금
3. 기업의 출연금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

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·도에 보조할 수 있다.

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, 시·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, 출연의 방법 및 시기,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7조(특례보증)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자금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,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

③ 특례보증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④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내역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.